

디지털포용법안 심사보고서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17일, 고동진의원 등 108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9.3.) 상정, 축조심사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11.2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6.) 상정, 소위심사
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고동진 의원)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제 디지털기술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고 융합하는 디지털심화 시대의 필수재가 되었음.

이러한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국가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디지털 기술의 이용·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기회 상실 등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능정보화의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제정안은 디지털포용 등 주요 정책개념 정의,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디지털역량 함양, 접근성보장 및 포용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는 내용임.
- 종전의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서 나아가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스스로가 디지털 사회에 대한 참여 동기를 가지고 디지털의 혜택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

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